

수지초등학교 방과후·돌봄 소위원회 규정

제정 2025.03.01.

개정 2026.02.24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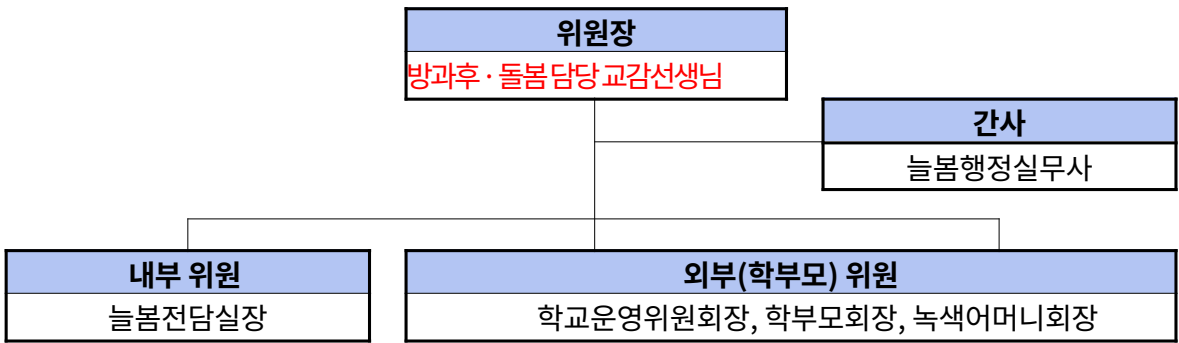
제1조 【명칭】 명칭은 ‘수지초등학교 방과후·돌봄 소위원회’ 라 칭한다.

제2조 【목적】

- 가. 학교운영위원회는 방과후·돌봄 과정 운영과 수익자 경비 부담 사항 및 예산이 포함된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을 심의한다.
- 나. 학교운영위원회는 프로그램, 급·간식 등 방과후·돌봄 과정 운영의 일부 또는 전반을 기관이나 업체 위탁 시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과후·돌봄 소위원회 (이하, “소위원회” 라 한다)를 설치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 별도의 소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, 학교운영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를 청문할 수 있다.

제3조 【구성】

- 가. 방과후·돌봄 소위원회는 위원장(방과후학교 담당 교감) 1명, 학부모위원 3명 (학교운영위원회장, 학부모회장, 녹색어머니회장), 늘봄전담실장을 포함한 5인으로 조직한다.
- 나. 소위원회 회의는 총인원 5명 중 참석 인원 2/3 이상(3명 이상)이면 성원이 된다.



제4조 【위원의 임기】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 소위원회 위원장이 호선되는 사유로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5조 【역할】

가. **방과후·돌봄** 위탁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업체의 방과후학교 참여 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·검토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결과 제출한다.

2) **방과후·돌봄** 운영에 관련된 목적, 방침, 운영 일정, 운영 방법, 인력 채용에 관한 사항 등 세부 운영 및 전반적 관리 방안 등을 검토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결과 제출한다.

3) 개인 위탁 강사 평가위원 및 업체 위탁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.

제6조 【회의 소집】 **방과후·돌봄** 강사(돌봄교실 특기·적성 강사 포함) 선정 관련 검토 및 심사할 사항이 있을 때,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.

제7조 【간사】 협의록 작성 및 늘봄 행정 업무를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늘봄행정실무사가 담당한다.

제8조 【운영세칙】 이 영에 규정한 이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【시행일】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1조 【시행일】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